



TM

산림인증

KFCC/00-001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44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문서번호 : KFCC-G-01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25. 05. 21.

시 행 일 : 2025. 05. 21.

검 토 일 : 2030. 04. 20.

연 락 처 : kfcc@kofpi.or.kr

목 차

1. 총칙	4
2. 인증제도 운영체제	4
3. 운영기관의 조직 및 인증제도 운영	6
4. 인정기관의 조직 및 인증기관 인정	9
5.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10
6.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12
7. 인증신청조직	13
8. 인증로고의 사용	13
[별표 1]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기준(제9조 관련)	14
[별표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0, 24조 관련)	15
[별표 3] 산림인증심사일수 기준(제21조 관련)	18
[별표 4] 산림인증 심사비용	20
[부속서]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hain of Custody) 인증기관 요구사항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8. 11. 21.
개 정	2019. 12. 17.
개 정	2021. 12. 21.
개 정	2025. 05. 21.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산림인증)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의 제6호(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이 한국산림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역할과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역할에 적용한다.

2. 인증제도 운영체계

2.1 운영기관

인증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진흥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a) 한국산림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b) 산림경영(FM) 및 임산물 생산·유통(CoC) 인증표준 등 개발 및 개정 관리
- c)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 d) 인증 심사원 자격기준 제정 및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 e) 산림인증(KFCC/PEFC) 인증마크 사용계약, 승인 및 관리
- f) 인증등록시스템 운영 및 실적관리
- g) 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 h)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산림인증상호인정프로그램) 및 다른 국가산림인증운영기관(NGBs)과 공인기관(PEFC Authorised Body)과의 협력
- i)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2 인정기관

국제인정기관협력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IAF))에 국가 인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a) 인증기관 인정신청 상담 및 인정 심사·평가
- b)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 c)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 인증기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되고,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시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a) 인증 상담 및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b) 인증 현황 보고
- c) 인증 조직의 올바른 인증 유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 d) 그 밖에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이 정한 규정 등의 준수

3. 운영기관의 조직 및 인증제도 운영

3.1 운영기관의 품질시스템

3.1.1 운영기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PEFC 요구사항에 부합한 품질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절차를 문서화하고, 필요 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1.2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3.2 한국산림인증위원회 구성

3.2.1 운영기관은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공평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산림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a) 인증제도 운영방침 결정
- b) 산림인증표준의 개발 및 승인
- c) 인증기관의 공시(Notification) 결정
- d)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2.2 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은 산림인증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이 있는 자여야 한다.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산림인증표준 개발

3.3.1 운영기관은 PEFC 요구사항에 따라 산림인증표준 개발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3.3.2 운영기관은 PEFC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증표준 개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3.3 운영기관은 개발된 산림인증표준을 공개하고, 환경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에 1회 이상 개정을 위한 검토해야 한다.

3.4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3.4.1 운영기관은 [별표 1]에 부합하는 인증기관을 공시해야 한다.

3.4.2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과의 공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3.4.3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공시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a)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b)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 c) 한국산림인증 및 PEFC인증의 이익 및 활성화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3.4.4 인증기관의 공시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공시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5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

3.5.1 운영기관은 인증 받은 조직 등이 PEFC 및 KFCC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과 사용 승인 절차를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3.5.2 운영기관은 인증 받은 조직 등이 인증마크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해야 한다.

3.6 인증정보 관리

3.6.1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다음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a) 인증조직(인증제품 포함)의 정보
- b) 인증마크 사용자의 정보
- c) 운영기관이 공시한 인증기관의 정보
- d) 기타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6.2 운영기관은 인증 조직(organisation)의 경영 기밀, 개인정보를 제외한 3.6.1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 사전에 해당 조직에 알려야 한다.

3.6.3 운영기관은 산림경영(FM)인증 조직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심사 발견사항(부적합 등)이 포함된 인증심사보고서의 요약본을 공개해야 한다.

3.6.4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중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이 기밀로 요청한 정보는 기밀로 취급하되, 법률 및 정부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해당 조직에 알려야 한다.

3.7 인증제도 실태조사

3.7.1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a) 인증기관의 심사 및 보고의 적절성,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및 심사 기술 검토
- b) 인증 심사 서비스 품질 점검
- c) 인증마크 사용의 적절성, 인증제품 생산 및 거래 현황 등

3.7.2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직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실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적용되는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실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8 수수료

3.8.1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수수료(Notification fee)를 징수할 수 있다.

3.8.2 운영기관은 PEFC 및 KFCC 인증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인증마크 사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9 불만 등의 처리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10 국제상호인정 등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 확보와 국내 인증서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 인정기관과 협력하고, PEFC와의 상호인정 체계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 인증제도 홍보 등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3.12 임시 인증기관

운영기관은 인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임시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a) 인정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활동 자격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본 지침 관련 조항(5.1.2)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비고: CoC 인증기관의 경우, 본 지침 [부속서] 6. 자원 요구사항을 따른다.

- b) 인정 신청 기관은 임시 인증기관 자격 승인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련 ISO 문서 기반 KFCC(또는 PEFC)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절차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c) 최대 1년 이내에 공식 인정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인정 신청 기관에 대한 임시 인증기관 승인은 철회되며, 발급된 비공인 인증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 인정기관의 조직 및 인증기관 인정

4.1 인정기관의 품질시스템

4.1.1 인정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관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4.1.2 인정기관은 IAF(국제인정포럼) MLA(국제상호인정협정)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1.3 인정기관은 제5조에 따라 다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a) 인증기관이 인정기준에 적격한지 심사 및 인정
- b) 운영기관이 정한 인증기관의 의무 및 인증심사원 자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증기관이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

4.1.4 인정기관은 인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기관이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서는 아니된다.

4.2 인정신청 접수

4.2.1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규정을 문서화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4.2.2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인정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인정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3 인정기준 및 인정심사 등

4.3.1 산림인증은 산림인증표준의 개발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공평하고 충분한 역량이 입증된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3.2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은 PEFC 요구사항에 따라 산림경영인증은 ISO/IEC 17021-1을 CoC인증은 ISO/IEC 17065 및 운영기관 추가 인정표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 산림인증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에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4.3.3 인정기관은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의 역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3.4 인정기관은 인정신청을 한 조직에 대해 인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해 인정기관이 인정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3.5 기타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인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5.1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 등

5.1.1 인증 심사는 인증 표준 개발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인정기관에 의해 충분한 역량이 입증되며, 인증조직과의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해 수

행되어야 한다.

5.1.2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 2]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확보하고, 다음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a)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

b) 산림 기반 제품의 생산·가공·유통·구매 등 CoC(Chain of Custody: 관리 연속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

5.1.3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정기관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1.4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공시(Notification) 조건을 만족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시되어야 한다.

5.2 인증심사 등

5.2.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인증절차 등을 인증 신청조직에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가 구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5.2.2 인증기관은 인정기준 및 인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5.2.3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기준은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단체산림경영인증가이드(KFCC-A-01),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표준(KFCC-S-03), KFCC/PEFC 인증마크 사용표준(KFCC-S-04)으로 하며, 심사절차는 ISO 19011을 따라야 한다.

5.2.4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후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신청조직에게 제공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산림경영인증의 경우, 심사의 증거로 인증 표준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외부 이해관계자(지역공동체 등)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정보를 인증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5.2.5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조직이 인증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신청조직에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만약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조직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2.6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인증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운영

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2.7 인증기관은 발급되는 모든 산림경영인증 및 CoC인증 인증서와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 및 범위에 관한 변경 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2.8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인증조직에 대한 사후관리심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사후관리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인증조직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 안에 갱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고: 인증기관 요구사항 등 세부 기준을 나타내는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5.2.9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조직의 인증마크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5.2.10 인증기관은 인증조직이 인증범위 등을 추가 신청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3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a)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 b) 신청조직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고: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관련 인정기관의 인정마크(심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의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d) 기타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6.1 인증심사원 교육 등

6.1.1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증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

b) 기타 운영기관이 인증심사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1.2 운영기관은 인증심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 전, 한국산림인증제도 공식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교육 운영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6.1.3 인증심사원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교육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1.4 운영기관은 인증심사원 기초교육과정 이수 후 지식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행하고,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행한다.

비고: CoC인증 심사원 교육의 경우, PEFC가 주관 운영기관이며, 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주최 기관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6.2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7. 인증신청조직

7.1 인증신청 등

7.1.1 산림경영인증 신청조직은 국내에서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7.1.2 CoC인증 신청조직은 국내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구매, 판매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7.1.3 인증신청조직은 인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인증마크의 사용

8.1 인증로고의 사용

8.1.1 인증조직 등이 PEFC 및 KFCC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8.1.2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 등은 운영기관에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8.1.3 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받은 조직은 인증마크 사용표준(KFCC-S-04) 및 기타 운영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인증마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5. 12. 22.>

이 지침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일로부터 시행된다.

[별표 1]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기준

1.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의 규정된 일부로서 인증기관의 모든 인증활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2. 운영기관이 정한 특정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것
3. IAF MLA에 등록된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4. 운영기관의 “공시 계약서”에 서명할 것

[별표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인증심사원은 산림경영 혹은 CoC 그리고 인증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 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산림경영(FM) 인증심사원

1. 학력요건 혹은 실무경력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4년제 대학에서 산림 또는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로 산림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나. 2년제 대학에서 산림 또는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로 산림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 다. 고등학교 졸업(비전공자) 후 산림 관련 실무경력 6년 이상

학력요건	실무경력 요건
4년제 대학에서 산림 관련학과 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2년제 대학에서 산림 관련학과 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비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6년 이상

※ 실무경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산림 관련 산업분야(공공기관업무 포함)에서 산림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 및 수행
- 나. 산림 관련 연구업무의 수행
- 다. 산림관리 등에 대한 인증심사 혹은 컨설팅 업무 수행
 - * 산림 분야와 관련하여 연간 72일 이상의 자문서비스 수행 경력 및 연간 30일 이상의 인증심사 수행 경력(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0.5일로 산정)은 1년의 실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

2.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및 시험평가 : 다음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과정명	인증심사원 교육
산림경영인증 심사원 교육	-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혹은 -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
지식평가	-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지식평가에 합격

3. **인증심사경력 요건:** 1호~2호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심사원(보)로서 최소 2회 이상의 인증심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인증심사원 자격유지 요건:** 인증심사원은 2년에 1회 이상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CoC 인증심사원

1. **학력요건 혹은 실무경력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여야 한다.

가.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림 혹은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로 산림 혹은 목재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실무경력 2년 이상

나. 고등학교 졸업(비전공자) 후 산림·목재관련 산업분야 혹은 인증·인정분야에서의 실무경력 3년 이상

학력요건	실무경력 요건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림 혹은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	산림 혹은 목재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실무경력 2년 이상
비전공자	산림 혹은 목재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실무경력 3년 이상

※ 실무경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산림 혹은 목재관련 산업분야(공공기관업무 포함)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 및 수행

나. 산림 혹은 목재관련 연구업무의 수행

다. 산림 혹은 목재관련 인증심사 혹은 컨설팅 업무 수행

* 산림/목재 분야와 관련하여 연간 72일 이상의 자문서비스 수행 경력 및 연간 30일 이상의 인증심사 수행 경력(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0.5일로 산정)은 1년의 실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

라. Chain of Custody(CoC)인증 심사원 업무 수행

* 프로세스 인증 관련 인증심사 실무 경력을 인정

2.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및 시험평가 : 다음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과정명	인증심사원 교육
COC인증 심사원 교육	-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혹은, -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
시험평가	-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시험평가에 합격

3. 인증심사경력 요건 : 1호~2호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심사원(보)으로서 최소 2회 이상의 인증심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인증심사원 자격유지 요건 : 인증심사원은 2년에 1회 이상 운영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 칙<2025. 05. 21.>

1. CoC인증 심사원 교육은 PEFC와의 상호인정 체결에 따라 PEFC 주관 교육으로 이관된다.(PEFC ST 2003:2020)
2. 본 지침 내 CoC인증 심사원 자격 요건은 존치하되, PEFC와의 상호인정 협정 관계가 유지되는 한 본 지침의 부속서(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인증기관 요구사항) 내 요구사항을 따른다.

[별표 3]

산림인증 심사일수

□ 산림경영(FM) 인증

인증면적(ha)	1단계 심사 (일수)	2단계 심사 (일수)
500이하	0.5	1
501 - 1,000	1	1
1,001 - 5,000	1	1.5
5,001 - 10,000	1	2
10,001 - 25,000	2	3
25,001 - 50,000	2	4
50,001 - 100,000	2	5
100,000 초과	3	5

※ 1·2단계 심사의 정의 및 상세 내용은 ISO/IEC 17021-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따름

비고 1. 심사일수는 심사 수행 시간만을 규정한다.

비고 2. 심사일수는 3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으로 유지하여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 사유 또는 심사 대상 현장의 분산성 등)

비고 3. 사후관리 심사일수는 최초심사의 70%를 적용한다.

비고 4. 갱신심사는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단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비고 5. 인증비용은 심사비용(심사일수 × 심사요율) + 부대비용(행정비용, 출장비용 등)으로 산출되며, 심사요율 및 부대비용은 인증기관 내규에 따른다.

□ 임산물 생산·유통(CoC) 인증

사업장 수	심사 일수
1 ~ 2	0.75
3 ~ 5	1
6 ~ 10	1.25
11 ~ 20	1.5
21 ~ 50	2
51 ~ 100	3
100 초과	4.5

비고 1. 심사 일수는 심사 수행 시간만을 규정한다.

비고 2. 심사일수는 3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으로 유지하여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 사유 또는 신규 제품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 등)

비고 3. 인증비용은 심사비용(심사일수 × 심사요율) + 부대비용(행정비용, 출장비용 등)으로 산출되며, 심사요율 및 부대비용은 인증기관 내규에 따른다.

[별표 4]

산림인증 심사비용

구분	내용
가. 심사비용	○ 국제인정기관협력포럼(IAF)에 등록된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정한 심사요율에 [별표 3]을 기반으로 한 심사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행정비용	○ 신청비, 관리비 및 인증서 발급비 등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 산림경영(FM) 인증 ○ 신청조직(기업 또는 기관)의 심사대상 산림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또한, 심사 일수를 고려하여 실비로 출장비용³⁾을 산정한다. ☐ 임산물 생산·유통(CoC) 인증 ○ 신청조직(기업 또는 기관)의 심사대상 사업장²⁾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또한, 심사 일수를 고려하여 실비로 출장비용³⁾을 산정한다.
<비고> 1) 심사대상 산림은 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산림 현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하며, 산림 현장은 조직(기업 또는 기관)에 따라 1개 이상일 수 있다.(단체산림경영인증 등 포함) 2) 심사대상 사업장은 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하며, 작업 현장은 조직(기업 또는 기관)에 따라 1개 이상일 수 있다.(복수사업장인증, 외주처리 등 포함) 3) 출장비용에는 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등이 포함된다. 4) 임산물 생산·유통(CoC) 인증기관은 정액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서]

2021-12-21

제3판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hain of Custody) 인증기관
요구사항

저작권

© PEFC 2020

이 PEFC 위원회/KFCC 문서는 PEFC 위원회/KFCC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PEFC 위원회/KFCC의 홈페이지에서 또는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이 문서의 어떤 부분도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PEFC 위원회/KFCC의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문서 이외의 다른 형식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생되거나 복사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유일한 공식 버전은 영어입니다. 번역된 문서는 PEFC 위원회/KFCC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최종문서입니다.

문 서 명 : PEFC/KFCC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기관 요구사항

문서제목 : PEFC ST 2003:2012

승인기관 : PEFC 위원회 총회

날짜: 2012-07-02

발행일자 : 2011-07-16

시행일자 : 2012-07-16

제2차 개정판

문서제목 : PEFC ST 2003:2012 2판

승인기관 : PEFC 이사회

날짜: 2012-11-17

발행일자 : 2014-12-11

시행일자 : 2014-12-11

제3차 개정판

문서제목 : PEFC ST 2003:2020 3판

승인기관 : PEFC 이사회

날짜: 2020-01-17

발행일자 : 2020-02-14

시행일자 : 2022-08-14

목차

목차	
서문	1
개요	1
1. 적용범위	2
2. 인용표준	2
3. 용어 및 정의	3
4. 일반 요구사항	5
4.1 법적 및 계약적 사항	5
4.2 공정성 관리	5
4.3 배상책임 및 재정	5
4.4 비차별적 조건	5
4.5 기밀유지	6
4.6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공개	6
5. 조직 요구사항	6
6. 자원 요구사항	6
6.1 인증기관 인원	6
6.2 평가를 위한 자원	14
7. 프로세스 요구사항	14
7.1 일반사항	14
7.2 신청	14
7.3 신청 검토	15
7.4 심사	15
7.5 검토	17
7.6 인증 의사결정	17
7.7 인증문서	17
7.8 인증생산물 목록	19
7.9 사후관리	19
7.10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19
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20
7.12 기록	20
7.13 불만 사항 및 이의제기	20
8.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20
8.1 인증기관의 내부 심사	20
부속서 1 (규범) - 인증기관의 PEFC/KFCC 공시	21
부속서 2 (규범) - PEFC/KFCC 공시를 위해 PEFC/KFCC가 인정한 인정	22
부속서 3 (규범) - 복수사업장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	23
1 개요	23
2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 자격 기준	23
3 인증기관 자격 기준	23
3.1 일반 사항	23
3.2 계약 검토	24
3.3 심사	24
3.4 부적합	24
3.5 인증서	25
4 현장심사 샘플링	26
4.1 방법론	26
4.2 샘플의 규모	28
4.3 인증심사 기간	29
부속서 4 (규범) - 심사 보고서의 최소 내용	30
참고문헌	31

서문

이 표준의 본문은 PEFC(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 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다수의 이해 당사자 작업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20년 1월 17일 PEFC 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표준의 요구사항은 'PEFC ST 2002,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하는 모든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4일(시행일로부터 18개월의 전환 기간 포함)부터 시행된다.

PEFC 위원회는 국가산림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인정을 제공하며 국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PEFC ST 2002) 및 PEFC 상표 사용에 관한 규칙(PEFC ST 2001)을 규정한다.

PEFC 위원회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IAF 생산품 인증 다자간 상호인정(MLA)에 서명한 인정기구의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은 인정된 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적격성/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에게 리스크를 줄인다. IAF 회원인 인정기관은 최상의 수준으로 인정업무를 운영하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국제표준과 그런 표준 적용을 위한 IAF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IAF 인정기구 회원들이 운영하는 인정 프로그램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정기적 동등성평가(PE)를 바탕으로 이들 인정기구들의 승인을 받은 인정은 어느 한 국가에서 인정받은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들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그 인정서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이 표준은 PEFC ST 2003:2012(제2판)을 취소하고 대체한다.

개요

PEFC/KFCC 위원회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ISO/IEC 17065 및 PEFC/KFCC 표준 그리고 이 표준에 명시된 ISO 19011 관련 조항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ISO/IEC 17065는 생산품 및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국제표준이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은 하나의 프로세스 인증으로 여겨지며, 여기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

(CoC)는 조달된 원료(source)의 원산지에 관한 투입(input) 정보를 판매/운송된 생산품의 원산지에 관한 산출 정보로 변형시키는 일련의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요구사항은 PEFC ST 2002 및 KFCC-S-03:2021에 기술되어 있으며, PEFC 상표 사용에 관한 규칙은 PEFC ST 2001에, KFCC 인증로고 사용에 관한 표준은 KFCC-S-04: 2021과 PEFC/KFCC 위원회 기술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용어 “하여야 한다(Shall)”는 ISO/IEC 17065 요구사항과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의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의무조항을 나타내기 위해 본 표준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용어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정된 수단으로써 IAF와 PEFC/KFCC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표준에 대한 규범 지침은 PEFC/KFCC 위원회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표준에는 ISO/IEC 17065 그리고 ISO 19011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표준들은 ISO 또는 국가 표준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PEFC ST 2002 및 KFCC-S-03:2021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스킴 특정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2 인용표준

발간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인용 표준에 대해서는 언급된 표준만을 적용한다. 발간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 표준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IAF MD 2, *Mandatory Document for the Transfer of Accredited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IAF MD 4, *Mandatory Document for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or auditing/assessment purposes*

ISO/IEC 17000,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ISO/IEC 17065,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ISO 19011,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
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PEFC ST 2002, *Chain of Custody of Forest and Tree Based Products - Requirements* (hereinafter the Chain of Custody standard), (available from www.pefc.org)
PEFC ST 2001, *PEFC Trademarks Rules - Requirements* (hereinafter PEFC Trademarks standard), (available from www.pefc.org)

3 용어 및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와 함께 ISO/IEC 17000, ISO/IEC 17065, ISO 19011, ISO/IEC 가이드 2 및 PEFC ST 2002, KFCC-S-03:2021에 제시된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3.1 심사

심사 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고: 이 문서에서 사용된 "심사(audit)" 용어는 ISO/IEC 17065에서 사용된 "평가(evaluation)" 용어와 동일하다.

3.2 인증 의사결정자

심사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으며,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결정을 내리도록 임명된 개인 또는 단체(예: 위원회)

3.3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KFCC-S-03:2021: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3.4 고객 조직(Client organisation)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을 포함하여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취득한 조직(organisation)

비고: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고객 조직"은 ISO/IEC 17065에서 사용되는 용어 "공급자"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

3.5 중부적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요구사항의 부재 또는 실행 및 유지의 실패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기능과 유효성에 체계적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증 원재료(raw material)에 대한 고객 조직의 인증비율표시(claim)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비고: 중부적합은 개별적인 부적합이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중부적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호관련 있는 다수의 부적합일 수 있다.

3.6 경부적합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독적 실패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기능과 유효성에는 체계적인 리스크를 가하지 못하고 인증 원재료(raw material)에 대한 공급자의 인증비율표시(claim)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3.7 관찰사항

부적합을 의미하지 않으나, 심사팀에 의해 개선의 기회로 확인될 수 있는 발견사항

3.8 PEFC 공인 기관

PEFC 공인 기관은 PEFC 상표 라이선스를 발행하며 PEFC 위원회를 대신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PEFC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조직(entity). 일반적으로 PEFC 공인 기관은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인증 위원회를 말한다.

3.9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s)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은 국가 내에서 PEFC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 국가 조직(organisation)이다.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 목록과 연락처는 PEF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은 PEFC 공인 기관이기도 하다.

3.8 참조.

3.10 검토자

심사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으며, 인증기관에 의해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결과를 검토하도록 임명된 인원 또는 단체(예: 위원회)

3.11 기술전문가

심사팀에 특정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인원. 기술전문가는 심사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일반 요구사항

인증을 신청한 고객 조직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평가하는 기준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최신 버전 및 PEFC 상표 및 KFCC 인증로고 사용에 관한 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비고: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최신버전, PEFC 상표 및 KFCC 인증로고 사용에 관한 표준, 이들의 개정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환 기간은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www.pefc.org 및 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법적 및 계약적 사항

ISO/IEC 17065:2012(E) 4.1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4.1.1 인증기관이 인증문서에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를 사용하거나 또는 PEFC/KFCC 인증스킴과 관련된 기타 목적으로 인증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PEFC/KFCC 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다른 조직(entity)이 PEFC 상표 표준 및 KFCC 인증로고 사용 표준에 따라 발행한 유효한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1.2 인증기관은 발행된 인증서의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가 단지 고객 조직이 PEFC/KFCC 인증스킴을 준수하는 것일 뿐 고객 조직에게 PEFC 상표 및 KFCC 인증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비고: 유효한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조직은 PEFC/KFCC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entity)이 발행한 PEFC 상표 사용 라이선스 및 KFCC 인증로고 사용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하여 PEFC 상표 표준 및 KFCC 인증로고 사용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품용” 및 “비생산품용”의 목적으로 PEFC/KFCC 라이선스 고유번호가 부착된 PEFC 상표 및 KFCC 인증로고 사용 라이선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

4.2 공정성 관리

ISO/IEC 17065:2012(E) 4.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4.3 배상책임 및 재정

ISO/IEC 17065:2012(E) 4.3항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4.4 비차별적 조건

ISO/IEC 17065:2012(E) 4.4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4.5 기밀유지

ISO/IEC 17065:2012(E) 4.5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에게 PEFC/KFCC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으로부터 PEFC/KFCC 위원회에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면 동의서는 고객 조직과 인증기관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공개

ISO/IEC 17065:2012(E) 4.6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5 조직 요구사항

ISO/IEC 17065:2012(E) 5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6 자원 요구사항

6.1 인증기관 인원

6.1.1 일반사항

ISO/IEC 17065:2012(E) 6.1.1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6.1.1.1 인증활동 참여 인원

6.1.1.1.1 인증기관은 계약 검토, 심사 수행, 인증 승인, 심사원 모니터링 등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이 이런 활동에 해당되는 적절한 지식과 적격성/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1.1.1.2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6.1.1.2 심사원

인증기관은 ISO 19011:2018 7.1항, 7.2.1항, 7.2.2항, 7.2.3.1항, 7.2.3.2항 및 7.2.3.4항, 7.2.3.5항에 따라 개인적인 자질 및 지식 그리고 스킬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6.1.1.2.1 교육

6.1.1.2.1.1 인증기관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수행하는 소속 심사원이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거나 이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되는 최소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중등 교육은 초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나, 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 고등 교육을 받기 전에 완료된다.

6.1.1.2.1.2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실무 경력이 6.1.1.2.1.1항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동등함을 인증기관이 입증할 수 있다면,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은 실무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비고: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는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생산품의 제조, 연구, 교육, 표준 개발, 임산업/임산물 협회, 산림법 및 규제, 운송, 납품 또는 재활용 또는 운송·보관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6.1.1.2.2 실무 경력

6.1.1.2.2.1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첫 번째 자격으로 소속 심사원이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최소 3년간 상근(full-time)으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는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생산품의 제조, 연구, 교육, 표준 개발, 임산업/임산물 협회, 산림법 및 규제, 운송, 납품 또는 재활용 또는 운송·보관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6.1.1.2.2.2 심사원이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 적합한 고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다.

비고: 3단계, 3등급 및 중등 교육 이후로 언급되는 고등 교육은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교육 수준이다.

6.1.1.2.2.3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지도하에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4번 수행한 경우, 6.1.1.2.5.1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 경력으로 요구되는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다.

6.1.1.2.3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훈련

인증기관은 신규 소속 심사원이 PEFC 위원회가 인정한 PEFC 시스템 및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대한 최초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1.2.4 심사 훈련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이 ISO 19011을 바탕으로 한 심사 기법과 관련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1.1.2.5 심사 경력

6.1.1.2.5.1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첫 번째 자격으로 소속 심사원이 심사원 훈련과정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적절한 심사원의 지도하에 2회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포함한 최소 4개 조직(organisation)에서 CoC인증 심사를 수행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 및 수목 기반 분야의 CoC인증 표준, ISO 9001 또는 14001 심사 수행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경우,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 훈련의 횟수는 2회로 단축될 수 있다.

6.1.1.2.6 적격성/역량

6.1.1.2.6.1 인증기관은 심사원이 다음 분야에 지식과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정의에 포함된 ‘3.7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KFCC-S-03 3.7항 b,c,d 및 e)에서 다루는 KFCC 산림경영표준(KFCC-S-01)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KFCC 시스템의 목표와 핵심 프로세스
- b) 심사 원칙, 절차 및 기법(ISO 19011:2018 7.2.3.2.a항 참조): 심사원이 이러한 적격성/역량을 심사별로 적절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며, 심사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함을 보장
- c) 조직(organisation)의 규모, 구조, 기능 및 관계,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관련 용어, 그리고 고객 조직의 업무용 언어, 또는 인증기관과 고객이 동의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관습을 포함한 조직(organisation)의 상황(ISO 19011:2018 7.2.3.2c 항 참조): 심사원이 조직(organisation)의 운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d) 산림 및 수목 기반의 원재료(raw material) 조달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제공되는 원재료(raw material) (사용) 방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국가 고유의 산림관리 방식 및 법 시행 제도: 심사원이 고객 조직과 공급자와의 계약 관계를 이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제공되는 원재료(raw material) (사용) 방지를 위한 고객 조직의 절차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노동 계약 및/또는 단체 교섭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 및 협정
 - ii. 노동자의 사회,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하는 인증되지 않은 원재료(raw material) 원산지의 국가산림 거버넌스 및 법 시행 제도
 - iii.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국제 협약(ILO 핵심협약)
 - iv.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무역과 관련된 국제 조약 및 협약(CITES)

6.1.1.2.6.2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이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의 다음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 및 지식, 이해 및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원칙 및 요구사항(KFCC-S-03)
- b) 생산품(비목재 임산물 및 재활용 재료(material)에서 온 생산품 포함), 프로세스, 특정 분야, 적용된 원재료(raw material)의 흐름, 측정 및 관리 조치 관행
- c)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고객 조직 적용 및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 d) 문서, 데이터 및 기록의 권한, 보안, 배포 및 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및 기술
- e)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의 적용 및 기타 생산품의 라벨 및 인증비율표시(claim) 적용
- f)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방법 및 지표를 포함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제공되는 원재료(raw material)의 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 적용
- g) 사회, 안전보건 요구사항

6.1.1.2.6.3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이 적용하는 심사 입회, 심사보고서 검토 또는 고객 조직의 피드백과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빈도 그리고 이들 심사원의 활동 및 주기적인 입회심사와 관련된 리스크 수준을 바탕으로 심사원을 대상으로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증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인증기관은 인원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측면에서 인원의 적격성/역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6.1.1.3 심사팀

심사팀은 6.1.1.2항에 정의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심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비 균형(gender balance)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6.1.1.3.1 기술전문가

경우에 따라, 기술전문가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심사원의 적격성/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기술전문가는 피심사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성명과 소속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1.1.4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

인증기관은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검토자 및/또는 인증 의사결정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경우,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비고: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는 동일인일 수 있다. ISO/IEC 17065:2012(E) 7.6.2항 참조.

6.1.1.4.1 교육

6.1.1.4.1.1 인증기관은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가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거나 이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되는 최소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중등 교육은 초등 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나, 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 고등 교육을 받기 전에 완료된다.

6.1.1.4.1.2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서의 실무 경력이 6.1.1.4.1.1항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동등함을 인증기관이 입증할 수 있다면,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은 실무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비고: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는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생산품의 제조, 연구, 교육, 표준 개발, 임산업/임산물 협회, 산림법 및 규제, 운송, 납품 또는 재활용 또는 운송·보관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6.1.1.4.2 실무 경력

6.1.1.4.2.1 인증기관은 검토자 또는 인증 의사결정자의 자격을 위해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최소 3년간 상근(full-time)으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1.1.4.2.2 검토자 또는 인증 의사결정자가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 적합한 고등 교육을 완료한 경우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다.

비고: 3단계, 3등급 및 중등 교육 이후로 언급되는 고등 교육은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교육 수준이다.

6.1.1.4.2.3 자격을 갖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원은 요구되는 최소 실무 경력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1.1.4.3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훈련

인증기관은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가 PEFC 위원회가 인정한 PEFC/KFCC 시스템 및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대한 최초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www.pefc.org 및 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1.4.4 심사 훈련

인증기관은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가 ISO 19011을 바탕으로 한 심사 기법과 관련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1.1.4.5 심사 경력

6.1.1.4.5.1 인증기관은 검토자 또는 인증 의사결정자의 첫 번째 자격으로 검토자 또는 인증 의사결정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에 참관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1.1.4.6 적격성/역량

6.1.1.4.6.1 인증기관은 검토자와 인증 의사결정자가 다음 분야에 지식과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정의 중 ‘3.7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KFCC-S-03 3.7항 b,c,d 및 e)에서 다루는 KFCC 산림경영 표준(KFCC-S-01)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KFCC 시스템의 목표와 핵심 프로세스
- b) 심사 원칙, 절차 및 기법(ISO 19011:2018 7.2.3.2a항 참조)
- c) 조직(organisation)의 규모, 구조, 기능 및 관계,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관련 용어, 그리고 조직(organisation)의 업무용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관습을 포함한 조직(organisation)의 상황(ISO 19011:2018 7.2.3.2c 항 참조)
- d) 산림 및 수목 기반의 원재료(raw material) 조달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제공되는 원재료(raw material) 조달 방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국가 고유의 산림관리 방식 및 법 시행 제도. 이 분야의 지식과 이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노동 계약 및/또는 단체 교섭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 및 협정
 - ii. 노동자의 사회,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하는 인증되지 않은 원재료(raw material) 원산지의 국가산림 거버넌스 및 법 시행 제도
 - iii.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국제 협약(ILO 핵심협약)
 - iv.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무역과 관련된 국제 조약 및 협약(CITES)

6.1.2 인증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 에 대한 적격성/역량 관리

ISO/IEC 17065:2012(E) 6.1.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6.1.2.1 인증기관은 자격을 갖춘 검토자, 인증 의사결정자 및 심사원이 2년마다 PEFC 위원회가 인정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보수교육에 참여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www.pefc.org 및 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2.2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또는/및 KFCC 인증로고 표준이 새로 발행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이에 따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검토자, 인증 의사결정자 및 심사원이 PEFC 위원회가 인정한 새로운 버전의 표준에 관한 보수교육에 참여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www.pefc.org 및 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2.3 심사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은 심사원이 매년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ISO 9001 또는 ISO 14001에 대하여 최소 5회 이상의 외부 심사를 수행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기서 이러한 심사 일수의 합계는 최소 2회의 PEFC/KFCC 심사를 포함한 최소 7일의 심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비고: 7일의 심사에는 보고서 작성 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6.1.2.4 법정 휴가 또는 장기 질병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6.1.2.3을 충족할 수 없는 심사원은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주도하에 최소 2회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1.2.5 검토자 및 인증 의사결정자는 최소한 1년에 1개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표: 자격 요구사항 개요

	심사원	검토자 및 인증 의사결정자
교육	-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거나 이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되는 최소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지식 -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교육은, 요구되는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과 동등함을 인증기관이 입증할 수 있다면 실무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음	
실무 경력	-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최소 3년간 상근(full-time)으로 근무한 실무 경력 -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 적합한 고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음 -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지도 하에 4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수행한 경우, 6.1.1.2.5.1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 경력으로 요구되는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부문에서 최소 3년간 상근(full-time)으로 근무한 실무 경력 -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 적합한 고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실무 경력은 1년이 단축될 수 있음 - 자격을 갖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원은 요구되는 최소 실무 경력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
훈련	PEFC 위원회가 인정한 최초 훈련	

	• ISO/IEC 19011	
심사 경력	• 심사원 훈련과정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적절한 심사원의 지도하에 2회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포함한 최소 4개 조직(organisation)에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수행 • 산림 및/또는 수목 관련된 분야에서 생산과 유통(CoC) 표준, ISO 9001 또는 14001 심사 수행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경우,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 훈련의 횟수는 2회로 단축될 수 있음	• 인증기관은 검토자 또는 인증 의사결정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에 참관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함
적격성/역량	• 6.1.1.2.6 참고	• 6.1.1.4.6 참고
자격 유지		
훈련	• PEFC 위원회가 인정한 보수교육에 2년 마다 참여 • 새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또는 상표 표준이 발행되는 경우	
심사 경력	• 매년 산림 및/또는 수목 기반 및 관련된 산업에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ISO 9001 또는 ISO 14001에 대하여 최소 5회 이상의 외부 심사를 수행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기서 이러한 심사 일수의 합계는 최소 2회의 PEFC/KFCC 심사를 포함한 최소 7일의 심사를 포함하는 것이 좋음 • 법정 휴가 또는 장기 질병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6.1.2.3을 충족할 수 없는 심사원은 자격을 갖춘 심사원의 지도하에 최소 2회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 최소한 1년에 1개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심사에 참관하여야 함

비고: 이 표는 심사원, 검토자 및 인증 의사결정자의 자격 요구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실

제 요구사항은 본 표준의 본문에 있다.

6.1.3 인원과의 계약

ISO/IEC 17065:2012(E) 6.1.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6.2 평가를 위한 자원

ISO/IEC 17065:2012(E) 6.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 프로세스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ISO/IEC 17065:2012(E) 7.1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1.1 ISO/IEC 17065:2012(E)의 7.1.3항 이외에, 인증기관은 PEFC/KFCC 위원회가 발행한 지침, 설명 및 해설과 같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7.2 신청

ISO/IEC 17065:2012(E) 7.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2.1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의 일부로서 고객 조직으로부터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a) 법인, 이름, 주소, 법적 지위
- b)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규정된 고객 조직의 문서화된 절차
- c) 생산품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생산품에 대한 설명
- d)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정의된) 복수 사업장 인증의 경우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사업장

비고: 이 정보는 고객 조직과 첫 번째 연락 시 획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7.3항 및 7.4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7.2.2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으로부터 최소한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생산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각 사업장 및/또는 생산품군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선택적 요구사항 적용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a)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 b)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의 의도된 적용

비고: 이 정보는 고객 조직과 첫 번째 연락 시 획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7.3항 및

7.4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7.2.3 인증기관이 신규 신청이 아닌 인증의 전환을 처리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고객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7.4.10항 요구사항 참조).

7.3 신청 검토

ISO/IEC 17065:2012(E) 7.3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3.1 인증기관은 심사에 앞서 고객 조직의 문서(7.2.1 b 참조)에 대해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7.4 심사

ISO/IEC 17065:2012(E) 7.4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4.1 인증기관은 심사 활동의 수행 및 일정에 관한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심사에 대한 심사계획이 수립되도록 보장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심사계획은 고객 조직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심사 일자는 고객 조직과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비고: 심사계획 작성에 대한 지침은 ISO 19011:2018, 조항 6.3.2에 따라 제공된다.

7.4.2 복수 사업장 인증의 경우, 심사계획은 방문 대상 사업장을 샘플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부속서 3을 참조하여야 한다.

7.4.3 인증기관은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심사팀을 선정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팀 및 심사팀장 선정에 대한 지침은 ISO 19011:2018의 5.5.4항에 제시되어 있다.

7.4.4 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고객 조직의 적합성 결정

- i.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 및 이의 효과적인 실행
- ii.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영시스템과 이의 효과적인 실행
- iii. 적용 가능한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제공되는 원재료(raw material) 조달을 방지하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자가검증시스템(DDS) 요구사항) 및 이의 효과적인 실행
- iv. KFCC 인증로고 사용 표준과 이의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고객 조직이 KFCC 인증로고를 사용하기 위해 고객 조직과 KFCC간에 서명하여야 하는 인증로고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성

비고: KFCC 인증로고 사용과 인증비율표시(claim)는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 시 평가된다. 최초 심사에서는 KFCC 인증로고 사용과 인증비율표시(claim)의 제안 또는 의도된 사용이 평가된다.

b) PEFC/KFCC 공시(notification) 계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수집

7.4.5 인증기관은 ISO 19011:2018의 6.4항에 제시된 관련 지침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사(최초, 사후관리 및 갱신)는 인증기관이 원격 심사가 가능한 경우를 서술한 이 표준의 7.4.6항 또는 7.9.2항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7.4.6 물리적 보관없이 운영되는 고객 조직의 경우, IAF MD 4에 따라 ICT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ICT 도구를 사용하여 심사의 모든 범위를 다룰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비고 1: 물리적 보관이 운영되지만 마지막 심사 이후 KFCC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은 고객 조직은 이 요구사항에 따라 원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비고 2: 고객 조직이 이전 심사 이후 원재료(raw material)를 조달하지 않고 KFCC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본 표준의 요구사항 7.9.2항을 적용할 수 있다.

7.4.7 인증기관은 심사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각 고객 조직별로 심사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 조직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계획하고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결정한 심사 시간 및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당성은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심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4시간이며, 만약, 특정 조건 하에서 정당화되고 문서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고 활동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7.4.8 인증기관은 ISO 19011:2018의 A.6항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심사 내 샘플링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4.9 인증기관은 심사 시간과 심사를 위한 샘플링을 결정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요구사항
- b)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범위 내에 있는 고객 조직 운영의 규모와 복잡성
- c)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로부터 오는 원재료(raw material)의 중대한 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공급의 정도
- d)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 사용 활동의 정도
- e)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 중 외주처리 현황

- f) 고객 조직의 경영시스템 심사를 포함한 예비 심사의 결과
- g) 사업장의 수 및 복수 사업장 고려사항

7.4.10 인증 전환의 경우, 인증기관은 ISO/IEC 17065의 7.4.5항 및 IAF MD2:2017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7.4.11 심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부속서 4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4.12 인증기관은 KFCC의 요청 시, 4.5항에 따라 KFCC에 영문 심사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심사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7.5 검토

ISO/IEC 17065:2012(E) 7.5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6 인증 의사결정

ISO/IEC 17065:2012(E) 7.6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6.1 심사 발견사항은 중부적합, 경부적합 및 관찰사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7.6.2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은 최소한 최초 인증 승인을 내리기 전에 시정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해당 시정조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7.6.3 중부적합은 최소한 갱신 인증 승인을 내리기 전에 시정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해당 시정조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7.6.4 심사에서 중부적합 및 경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고객 조직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은 그 기간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심사에서 확인된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기간 및 이에 대한 인증기관의 검증은 인증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갱신 및 사후관리 심사에서 확인된 경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늦어도 차기 심사 동안에 검증되어야 한다.

7.7 인증문서

ISO/IEC 17065:2012(E) 7.7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7.1 인증문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인증기관의 식별

b) 고객 또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의 대상이 되는 고객 조직명 및 주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고객 조직의 사업장/법인

비고 1: 고객 조직명 및 주소는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법적 조직(entity)명 및 주소(예: 우편 주소)일 수 있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대상인 고객 조직명 및 주소 또한 인증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2: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또는 ‘프로젝트 인증’(PEFC GD 2001 부속서 1 참조)의 경우, “명칭 및 주소”는 관리 조직(controlling entity)의 명칭 및 주소를 의미한다. 프로젝트명은 프로젝트 인증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c) 인증서 유형(개인, 복수 사업장, 생산자 그룹)

d) 승인된 인증 범위(7.7.2항 참조),

e) 인증기관의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 라이선스 번호를 포함하는 PEFC/KFCC 인증로고

f) 인정기관의 인정마크(적용 가능한 경우 인정 번호 포함)

g) 인증 승인, 확대 또는 갱신 일자, 그리고 인증 만료일 또는 갱신 만료일(7.7.6항 참조). 인증문서의 인증 승인일은 인증 결정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7.7.2 인증 범위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KFCC-S-03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비고: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식별은 심사가 수행되고 인증이 승인된 시점에서 유효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버전을 참조하여야 한다.

b) KFCC-S-04 인증로고 사용표준

비고: KFCC 인증로고 사용 표준의 식별은 심사가 수행되고 인증이 승인된 시점에서 유효한 인증로고 사용표준 버전을 참조하여야 한다.

c) 적용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d) KFCC 생산품 범주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생산품

비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또는 ‘프로젝트 인증’의 경우(PEFC GD 2001, 부속서 1 참조), 프로젝트명은 프로젝트 인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7.7.3 인증 범위가 인증서의 부속서에 포함된 경우, 인증서는 해당 부속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부속서는 인증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요청될 때마다 제공되어야 한다.

7.7.4 인증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증기관 명칭의 약어(발행

된 모든 KFCC 인증서에 동일한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약어(KFCC-CoC) - 인증기관이 부여한 번호
비고: 두 인증기관은 동일한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7.7.5 인증기관은 한국어, 영어 또는 기타 적절하고 합의된 언어로 인증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7.7.6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7.7.7 인증이 승인, 정지, 만료, 취소되거나 인증 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인증이나 인증기관이 PEFC/KFCC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관련 PEFC NGB 또는 PEFC NGB가 없는 국가의 경우 PEFC/KFCC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8 인증생산품 목록

ISO/IEC 17065:2012(E) 7.8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9 사후관리

ISO/IEC 17065:2012(E) 7.9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9.1 사후관리 심사는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최소한 4회의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매년’이란 12개월(± 3 개월)마다 한 번을 의미한다.

7.9.2 현장 사후관리 심사는 문서화 및 기록 검토와 같은 기타 심사 기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현장 사후관리 심사 간의 기간은 아래의 경우 2년을 초과(3개월 초과 가능)해서는 안 된다.

- a) 인증기관이 활용한 심사 기법으로 인증 조직(entity)의 인증기준 충족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제공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 b) 앞서 실시된 최초, 사후관리 또는 갱신 심사 동안 부적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c) 고객 조직의 조달이 중대한 리스크 공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d) 고객 조직이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기록 또는 인증기관의 독립적 샘플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록의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e) 마지막 심사 이후 고객 조직 또는 고객 조직의 사업장이 원재료(raw material)를 조달한 적이 없고 KFCC 인증비율표시(claim)를 한 어떠한 생산품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 기록을 제출한 경우

7.10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ISO/IEC 17065:2012(E) 7.10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ISO/IEC 17065:2012(E) 7.11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11.1 인증이 만료,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에게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의 사용과 인증비율표시(claim)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지의 경우,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의 적합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7.12 기록

ISO/IEC 17065:2012(E) 7.1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13 불만 사항 및 이의제기

ISO/IEC 17065:2012(E) 7.13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7.13.1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이 인증 요구사항에 부적합이 입증된 주장이 제기되거나 또는 고객 조직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PEFC/KFCC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13.2 인증기관은 PEFC/KFCC 위원회에 해결된 불만 사항 및 이의제기에 대한 요약 보고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이의 제기자/불만 사항 제기자의 식별(공개 대상)
- b) 고객 조직의 식별
- c) 불만 사항의 내용
- d) 불만 처리 프로세스 요약
- e) 불만 사항의 결과/해결책

8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ISO/IEC 17065:2012(E) 8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8.1 인증기관의 내부 심사

8.1.1 인증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활동으로 제한된 연간 내부심사 결과를 KFCC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속서 1 (규범) - 인증기관의 PEFC/KFCC 공시
(이 요구사항은 인증기관 인정의 추가 요구사항이 된다.)

KFCC가 인정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KFCC에 의해 공시되어야 한다.

PEFC/KFCC의 공시는 인증기관에게 KFCC가 인정한 유효 인증을 보유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이 표준 부속서 2참조). 인증기관은 KFCC에 KFCC가 규정한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인증에 관한 정보에는 보통 고객 조직의 식별, 승인된 인증 범위, PEFC/KFCC 공시 비용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객 조직의 연 매출액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PEFC/KFCC의 공시는 인증기관에게 KFCC가 규정한 KFCC 공시 비용을 지불토록 요구할 수 있다.

부속서 2 (규범) - PEFC/KFCC 공시를 위해 PEFC/KFCC 위원회가 인정한 인정

PEFC/KFCC 위원회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을 국제인정 협력기구(IAF) 또는 유럽지역인정협력기구(EA), 미주지역인정협력기구(IAAC),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협력기구(APAC), 남아프리카지역인정협력기구(SADCA), 아프리카지역인정협력기구(AFRAC) 및 중동지역인정협력기구(ARAC)와 같은 IAF 지역인정그룹의 생산품 인증에 대한 다자간 인정상호인정협정(MLA)에 서명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인정범위는 PEFC/KFCC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pefc.org) 및 kfcc.kofpi.or.kr에 공개되는 유효한 버전의 KFCC-S-03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및 KFCC-S-04 인증로고 사용 표준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범위는 인증기관의 심사기준이 되는 ISO/IEC 17065, 이 문서 및 기타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인정 인증서는 필요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속서 3 (규범) - 복수사업장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대한 부속서 2)

1 개요

1.1 이 부속서는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의 KFCC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것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서의 범위에 열거된 모든 사업장에 걸쳐 고객 조직의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이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과 적합하다는 확신을 제공하여 경제적·운영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 자격 기준

2.1 정의를 포함한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의 자격기준은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부속서 2에 포함되어 있다.

2.2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은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부속서 2의 요구사항과 함께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데이터(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나 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사업장에 대한 권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여야 한다.

- a)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문서화 및 변경
- b) 경영검토
- c) 불만 사항
- d)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
- e) 내부 심사 기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 f)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에서 온 원재료(raw material) (사용) 방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요구사항

2.3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부속서 2를 참조하여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 취득 및 유지의 목적만을 위해 독립 법인체 그룹으로 설립된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은 보통 소규모 기업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3 인증기관 자격 기준

3.1 일반 사항

3.1.1 인증기관은 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표준 및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부속서 2에 제시된 자격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 조직에 제공하여야 하며,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기관은 심사기간 중 동 자격 기준과 관련된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을 것임을 고객 조직에 통지하는 것이 좋다.

3.2 계약 검토

3.2.1 인증기관의 절차는 최초 계약 검토를 통해 샘플링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활동의 복잡성과 규모와 사업장 간의 차이가 식별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3.2.2 인증기관은 인증 수행을 위한 계약 당사자인 고객 조직의 핵심 기능(central function)을 식별하여야 한다. 협약서(agreement)는 인증기관이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의 모든 현장에서 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2.3 인증기관은 각 개별 사례에서 조직(organisation)의 사업장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이 적용되는 원재료(raw material)의 흐름을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샘플링 절차를 적용할 경우,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에 포함된 사업장들의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2.4 인증기관은 3.2.1, 3.2.2 및 3.2.3항에서 요구되는 활동들이 실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3.3 심사

3.3.1 인증기관은 복수 사업장 절차 하에서 심사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문서화 및 기록 검토, 현장심사 등을 포함하는 심사 절차에는 인증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부속서 2를 포함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의 모든 조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네트워크 심사에 하나 이상의 심사팀이 참여할 경우, 인증기관은 모든 심사팀이 제기하는 발견사항을 통합하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한명의 심사팀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3.4 부적합

3.4.1 고객 조직의 내부 심사 또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다른 사업장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에게 이런 부적합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결함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적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당 부적합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본사와 개별 사업장 모두가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부적합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결함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고객 조직은 인증기관에게 후속 조치를 해당 개별 사업장에만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4.2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에게 이러한 조치를 실시한 증거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 수립된 관리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샘플링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3.4.3 최초 및 갱신 심사 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특정 사업장에서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만족스러운 시정조치가 실행될 때까지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 전체에 대해 인증이 거부되어야 한다.

3.4.4 고객 조직이 어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증기관이 발견한 부적합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의” 사업장을 인증 범위에서 제외하는 시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5 인증서

3.5.1 하나의 독립 인증서는 고객 조직 본사명 및 주소를 포함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그 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사업장의 목록이 인증서 자체에 또는 부속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증서에 참조되어 발행되어야 한다.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범위 또는 참조사항은 인증받은 활동 목록이 사업장 네트워크별로 수행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속서 또는 기타 참조는 인증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증서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5.2 개별 사업장에 서로 다른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사업장의 인증서 그리고 부속서에 적용되는 해당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을 명확히 언급하여야 한다.

3.5.3 인증이 적용되는 각 사업장별로 고객 조직에 하위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보조 인증서와 동일한 범위 또는 그 범위의 하위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인증서를 분명하게 참조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하위 인증서에는 “하위 인증서의 유효성은 메인 인증서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위 인증서에 하위 인증번호가 포함된 경우, 3.5.1항에 따라 인증번호와 연계하여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5.4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한 곳이 인증서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 전체가 취소된다. (상기 3.2항 참조)

3.5.5 인증기관은 사업장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를 위해 고객 조직에게 사업장의 폐쇄 및 설립 또는 활동의 변경에 관해 인증기관에 알리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고객 조직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이를 인증서 남용으로 고려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이를 KFCC에 보고하여야 한다.

3.5.6 추가 사업장이 인증서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인증기관은 각 심사 사이에 기존 인증서에 사업장을 추가할 수도 있다. 각 심사 사이에 추가될 수 있는 사업장의 수는 마지막 심사에서 실시된 기존 사업장의 100%로 제한된다.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고객 조직은 심사 사이에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에 포함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장의 수와 함께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b) 고객 조직은 인증기관에게 고객 조직으로부터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이 적용되는 추가 사업장, 생산품군 및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c) 인증기관은 인증서에 포함될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에 대한 내부 심사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 d) 인증기관은 고객 조직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내부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 인증기관은 (d)의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추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가 필요한지, 또는 (b), (c) 및 (d) 각 항목에 따른 검토 결과가 사업장이 추가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f) 추가 사업장을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에 추가하기 전에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추가 사업장은 차기 심사 전에 현장방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4장에 기초하여 신규 사업장의 샘플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비고 : 표준에서 원격 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요구사항 7.4.6항 참조), 현장 심사는 원격 심사로 대체될 수 있다.

4 현장심사 샘플링

4.1 방법론

4.1.1 사업장 샘플링이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 경우, 인증기관은 사업장 샘플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현장심사 시 사업장 간 모든 차이점과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실행이 평가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4.1.2 샘플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프로세스와 활동의 차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샘플은 서로 다른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물리적 구분 및 퍼센테이지 또는 크레딧 방법).

비고 :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샘플이 사업장에서 분리된 후에 결정됨을 의미한다.

4.1.3 샘플은 각 심사 사이에 사업장이 추가되었으나 현장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속서 3, 3.5.6장, 단락 e),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비고 1: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샘플이 사업장에서 분리된 후에 결정됨을 의미한다.

비고 2: 4.1.2항은 또한 4.1.3항에도 적용된다.

4.1.4 샘플은 아래 제시된 요인을 바탕으로 일부는 선별적으로, 또 일부는 비선별적인 것이 좋으며, 샘플링의 무작위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다른 사업장들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1.5 샘플의 최소 25%는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 좋다.

비고 : 리스크 기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선정은 식별된 리스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전 샘플의 현장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샘플의 25% 미만이 무작위로 선택될 수 있는 샘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4.1.6 이하 언급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샘플의 나머지 부분 선정 시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들 간의 차이가 가능한 크도록 한다.

4.1.7 사업장 선정 기준은 아래의 측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내부심사 또는 사전 인증심사 결과
- b) 불만 기록 및 기타 관련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c)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의 생산 프로세스상의 중대한 변경
- d) 적용된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상의 변경
- e) 마지막 인증심사 이후 변경사항
- f) 지리적 분포
- g) 마지막 외부 심사 이후 추가된 사업장

4.1.8 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장 선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사무소의 심사 완료 후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본사는 샘플의 부분이 될 사업장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촉박한 통지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4.1.9 본사는 샘플의 일부로서 모든 최초 및 사후관리 그리고 갱신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4.2 샘플의 규모

4.2.1 인증기관은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의 평가 및 인증의 일부로서 사업장 심사 수행

시, 샘플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이 부속서에 기술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4.2.2 인증기관의 절차를 적용한 결과가 아래 제시된 지침을 적용했을 때보다 샘플 수가 더 적게 도출될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자체 승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2.3 각 심사별로 방문해야 하는 최소 사업장 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현장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마지막 심사 이후 추가된 최초 심사 및 사업장(3.4.5항 단락 e에 따라): 총 사업장 수의 제곱근을 한 다음 정수로 올림한 값

$$y = \sqrt{x}$$

y = 방문 대상 사업장 수

x = 총 사업장 수

b) 사후관리 심사: 현재 총 사업장의 수에 0.6배를 곱한 수의 제곱근을 한 다음 정수로 올림한 값

$$y = 0.6\sqrt{x}$$

y = 방문 대상 사업장 수

x = 총 사업장 수

c) 갱신 인증심사 : 현재 사업장의 제곱근을 한 다음 정수로 올림한 값

$$y = \sqrt{x}$$

본사에서 인증 주기 동안 중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샘플의 크기를 0.8 배만큼 줄일 수 있다.

$$y = 0.8\sqrt{x}$$

y = 방문하게 될 총 사업장 수

x = 총 사업장 수

비고 : 마지막 심사 이후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3.4.5항에 따라), 샘플의 크기를 줄일 수 없다.

4.2.4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복수 사업장 고객 조직에 포함되는 활동에 대한 인증기관의 리스크 분석 결과가 다음의 요소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 샘플의 규모는 증가되어야 한다.

a) 사업장 규모 및 직원 수

b) 원재료(raw material) 흐름 및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의 복잡성과 편차

c) 산립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적용과 원재료(raw material) 원산지 정의에서의 편차

d)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source)에서 온 원재료(raw material) 조달의 리스크 수준

e) 불만 기록 및 기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련 측면

f) 기타 다국가적 측면

g) 내부 및 외부 심사 결과

h) 복수 사업장 유형(복수 사업장 또는 생산자 그룹)

4.3 인증심사 시간

4.3.1 인증기관은 복수 사업장 심사에 소요된 시간과 관련하여 심사 시간 할당에 대한 인증기관 자체의 전반적인 방침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3.2 최초 및 사후관리 그리고 갱신 인증심사의 일부로 각 개별 사업장에서 소요될 최소 심사 시간은 7.4.7항에 규정된 심사 시간과 동일하다. 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며 본사에서만 심사하도록 규정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조항을 고려하여 심사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4.3.3 본사에 대한 시간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4 (규범) - 심사 보고서의 최소 내용

심사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첫 장
2. 고객 조직에 대한 정보
3. 다음을 포함한 고객 조직의 PEFC/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 (CoC)에 대한 설명
 - a) 경영시스템
 - b) 조직(organisation) 및/또는 사업장의 부분
 - c) 외주처리 프로세스/활동
 - d) 생산품군,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사업장 및/또는 생산품군을 포함하는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에서 다루는 생산품
 - i.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 ii. PEFC 상표 또는 KFCC 인증로고의 의도된 적용
4. 심사의 범위
 - a) 적용 가능한 경우, 각 사업장 및/또는 생산품군을 포함하는 KFCC-S-04와 KFCC-S-02의 적용된 인증 기준
 - i.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 ii. KFCC 인증로고 사용 표준
 - iii. 자가검증시스템(DDS) 요구사항
 - b) 방문한 사업장
 - c) 원격 심사의 경우,
 - i. 원격 심사 수행에 대한 정당성
 - ii. 적용된 기법과 그 기술의 정당성
 - d) 복수 사업장의 경우,
 - i. 부속서 3.3.2.3항에 따른 샘플 크기 계산
 - ii. 샘플링에 대한 정당성
 - iii. 심사 대상 사업장
5. 심사 발견사항
 - a) 인증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한 모든 조항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을 증명하는 결과 제시
 - b) 시정조치 및 종결의 보고를 위해 발행된 시정조치와 시간
 - c) 이전에 발행된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
 - d) 권고된 인증 의사결정

참고문헌

IAF MD 1, *Mandatory Document for the Certification of Multiple Sites Based on Sampling (IAF MD 1)*